

대법원 2003. 11. 13 선고 2003다27672 판결 [보증채무금]

참 조 조 문

[1] 민법 제428조

재 판 경 과

대법원 2003. 11. 13 선고 2003다27672 판결

서울지방법원 2003. 4. 30 선고 2002나34290 판결

전 문

【원고,상고인】 중소기업은행

【피고,피상고인】 신AA기금 (소송대리인 변호사 정BA)

【원심판결】 서울지법 2003. 4. 30. 선고 2002나34290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, 원고가 1996. 7. 5.경 피고와 맺은 신용보증업무위탁계약에 기하여 1996. 12. 23.경 이 사건 간이심사 기준표에 따른 심사를 거쳐 피고의 수탁기관의 자격으로 소외 안CA과 신용보증원금 4,000만 원, 보증기한 1997. 12. 22.까지, 대출과목을 할인어음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, 안CA에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한편, 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안CA과 사이에, 여신과목을 할인어음, 여신한도를 4,000만 원으로 하는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, 그에 기하여 수시 어음할인대출을 실시하였으나, 원금 34,150,000원과 이자 5,214,632원, 합계 39,364,632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, 위 업무위탁계약상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고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(제8조 제1항), 신AA기금법, 동법시행령과 피고가 정하는 업무방법서, 제규정, 자동신용보증 취급요령, 기타 피고가 통보하는 업무처리기준 및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(같은 조 제2항),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로 하여금 "보증위탁계약위반 면책기준"에 의거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도록(같은 조 제3항) 약정되어 있는 사실, 그런데 위 보증위탁계약위반 면책기준은 간이심사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함으로써 신용보증 심사기준을 위반한 경우 중 신용보증 사정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때에는 피고가 보증채무이행청구 당시의 보증한도 초과금액 및 종속채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, 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을 처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요령을 규정한 신용보증심사운용요령 및 위탁보증심사요령에 부속된 신용보증 간이심사기준표의 유의사항에 의하면, 할인어음에 대한 보증의 경우 신청된 보증을 포함한 운전자금보증금액이 연간매출액의 2분의 1 이내 이어야 하고, 이 운전자금보증금액은 기존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을 포함하여 사정하며(이 경우 피고 기AB이나 소외 기술신AA기금의 일반보증과 할인어음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금액, 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), 매출액 한도는 연간매출액을 적용하여 사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최근결산일 현재 영업실적이 1년 미만이거나 생산시설의 증설, 수주실적의 증가 등으로 최근 매출실적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근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고, 이때 매출액은 할인어음의 경우 확인가능한 최DA부터 6월을 역산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하되, 매출액은 손익계산서, 부가세과세표준신고서,

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사실, 한편,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 이외에도 피고의 수탁기관으로서 위 안CA과의 사이에 1996. 11. 26. 신용보증원금을 3,000만 원, 대출과목을 금융채권자금대출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, 1997. 12. 22. 신용보증원금을 3,000만 원, 대출과목을 할인가액으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각 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, 기술신AA기금도 안CA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2,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그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, 안CA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1998. 4. 28. 이후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, 원고는 피고에게 1998. 6. 2.경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한 후 1999. 8. 31.경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금 합계 106,767,802원(1996. 11. 26.자 신용보증에 기한 대출원리금 36,122,296원 +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한 대출원리금 39,364,632원 + 1997. 12. 22.자 신용보증에 기한 대출원리금 30,862,924원 + 비용 417,950원)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, 피고는 원고의 위 보증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 당시 위 안CA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인 9,000만 원(= 피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 4,000만 원 + 1996. 11. 26.자 신용보증 3,000만 원 + 소외 기술신용보증 기금의 보증금액 2,000만 원)은 신용보증 당시 작성한 신용조사서상의 최근 6개월간 매출액 61,718,970원을 초과하였으므로, 초과금액인 28,281,030원에서 일부해지금액인 985만 원을 공제한 18,431,030원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,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서는 당시 신용보증 사정한도를 초과한 것이므로 위 면책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신용보증서에 따른 피고의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다.

이어서 원심은, 원고가 업무위탁계약 및 신용보증 간이심사기준표의 유의사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신용보증 직전 6개월인 1996. 6.경부터 같은 해 11.경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용보증한도를 사정하면 신용보증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보증심사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, 피고와의 신용보증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피고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가 통보하는 업무처리기준 및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고로서는 신용보증 간이심사기준표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을

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,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서 업무위탁계약 및 신용보증 간이심사기준표의 유의사항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신용보증한도액 사정 기준은 이 사건 신용보증 당시 원고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제로 조사한 연간매출액의 2분의 1 또는 최근 6개월간 매출액이지, 사후적으로 확인된 매출액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배척하였다.

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수긍이 가고, 거기에 무슨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,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이용우(재판장)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(주심)